



CLEAN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클린사업이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또는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정부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품목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클린사업장 인정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18년~'19년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도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인정유효기간 내)	▶ 안전·보건설비 · 작업장 등의 안전조치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 위험설비 안전장치 · 추락위험장소 안전조치 · 소음 방지시설 · 작업환경 개선설비 · 작업공정 개선설비 등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2,000만원 까지 ※ 단, 아래기준 해당시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중기사업장 (중기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용노동부 협의 후 별도 선정된 고위험업종 ▶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 단, 10인 미만 및 고위험업종은 70% 지원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제외)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사업장	▶ 사망사고 예방품목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 밀폐공간 질소재해예방설비 · 지게차 충돌예방설비 등 ▶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2,000만원 까지 ▶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 단,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추락방지 안전시설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계 안전방망	▶ 지원금액 : 건설현장 당 2,000만원 까지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2개소 까지 ▶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 단, 공사금액 3억원미만(65%), 10억원미만(60%)
산업단지 산재예방 시설	▶ 산업단지 관리기관, 사업주단체, 입주사업장	▶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 공단 판단금액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선정기준 등에 따름

I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의 안전·보건 시설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인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내)
 - '18년~'19년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 또는 공단·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도 사업장
 - ※ 단, 고용노동부·공단에서 직접 기술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감독·점검·기술지원 실시 사업장에 한함.

● 클린사업장 (최초인정)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관리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등 클린사업장 투자 계획 확인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한 경우 자금 지원 및 클린사업장으로 인정
 - ※ 관리적 사항 : 안전보건교육, 안전검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등
 -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

● 클린사업장 (재)인정

- 클린 인정사업장의 지속적인 인정기준 유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사업장이 클린 인정사업장으로 재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 지원사업장으로서 지원일(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된 사업장에 한함
 - ※ 추가지원 조건은 클린사업장 인정기준과 동일

✓ 클린사업 우선지원선정기준

● 공통적용 항목(65점)

- 1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 2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소업종 재해율)
- 3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업종(소업종 재해율)
- 4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5 장년근로자(만55세이상), 장애인, 외국인, 청년(15~29세 이하) 등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사업장(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의 관련 증빙자료 제출)
- 6 크레인(정격하중 2톤이상), 지게차(좌·입식) 보유사업장(해당설비 사진제출)

● 자율활동 우수항목(15점)

- 1 이사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노사문화대상, 강소기업, 일학습병행제로 인정 받은 사업장 등)
- 2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한 협력업체

● 일선기관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율항목(20점)

✓ 지원금액

- 클린사업장 (최초)인정 :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클린사업장 재인정 : 보조지원 한도금액(최대 2,000만원)에서 기 지원금액을 제외한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 ※ 보조지원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은 지원한도액을 초기화하여 재지원할 수 있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보다 우선 지원할 수 없음
- 지원한도액 추가지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클린사업 재인정 참여 시에만 증액가능, 인원 1명당 200만원)
 -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
 -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업종* 사업장

* 고위험업종(7개업종) : 화학비료제조업(20903),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05), 합금철제조업(21817), 철강장 연업(21821), 기타금속제품제조업(21823),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21902), 석유정제품제조업(23803)

✓ 시행기간 : 년 중 수시(재원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 (클린사업 참여신청(최초, 재인정)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클린사업 참여신청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및 고용노동부 감독·점검 또는 공단·민간위탁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한 사업장 중 자금지원 희망 시 참여 신청서를 제출
사업주(장) 신용평가	신용평가 실시 후 평가등급이 "양호"인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 ※ 평가등급이 "요주의 또는 위험"인 경우 클린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상사업장 선정	일선기관별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사업장을 선정 ※ 일선기관별 확정된 선정기준은 해당 일선기관의 홈페이지 참조
사업주 교육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업추진절차, 지원조건·내용, 부정당 행위 사례를 통한 청렴교육 등을 실시 ※ 불참한 사업장은 사업주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취소 가능
투자컨설팅	공단 직원이 투자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보조금지원 신청	투자컨설팅 결과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설비를 클린마켓에서 선정하여 보조지원 신청서와 투자계획서를 함께 제출
보조금 지원대상자 심사 및 결정	투자계획의 타당성, 투자설비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재정지원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양산품 구매 및 공사품 설치 등 클린사업장 인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개선 진행 ※ 계약 및 설비투자 전 단계에서 사업주가 보험보통보험자로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지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 및 설비투자를 진행하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투자완료 확인	공단직원이 현지 방문하여 투자내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지원설비의 안전성 및 투자사양 확인(안전조치기준 등 사양관련 자료 일치여부 등)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	투자완료확인 결과 투자계획서와 부합된 경우 보조금(지원비율 50~70%)을 교부하고 클린사업장으로 인정
사후기술지도	투자완료 확인 다음연도부터 최대 3년동안 연1회 이상 사후기술지도 실시 ※ 보조금으로 구입·취득한 산업재해예방설비의 목적의 사용여부, 효율적인 사용지도 등

사업주 ■■■ 공단 ■■■

II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참여사업장) ▶ 서식모음 및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방호장치 설치 시)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소요금액의 70%)
 - 「클린사업장 인정」 사업과 함께 신청할 경우 사업장당 보조한도액은 2,000만원

✓ 지원설비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 지게차 운행 중 충돌재해예방 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보장치 등)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설비(호흡용 보호구, 가스측정장비, 환기설비, 구출설비 등)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장비 및 설비, 압력방출장치 등
 - 특별관리물질 등의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소음방지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4~36조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장치 등

✓ 지원절차



사업주 ■■■ 공단 ■■■

- ※ 안전검사 대상품의 경우 안전검사 실시(합격) 후 투자완료 확인요청
-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미제출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방법

- 접수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1544-3088)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
 - ※ 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 시행기간 : 년 중 수시(재원 소진 시까지)

Ⅲ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지원

추락재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참여자업장) ▶ 서식모음 및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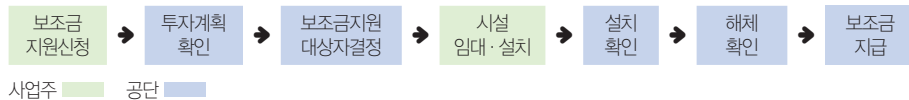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 ※ 추락방지 안전시설 : 시스템 비계, 안전방망

✓ 지원금액

- 건설현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 단,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2개소까지 지원 가능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50%까지 지원
 - ※ 3억원 미만 65%, 10억원 미만 60%까지 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접수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1544-3088)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
 -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 시행기간 : 년 중 수시(재원 소진 시까지)

Ⅳ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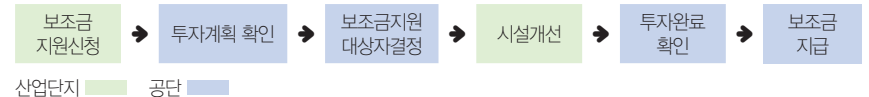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산업단지 관리주체,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사업주단체

✓ 지원금액

- 산업단지 당 10억원까지 지원 가능(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 기 지원받은 산업단지는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하며, 건물 건축비, 관리비 및 운영비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절차



- 지원대상설비 :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하는 안전보건 자료실, 상담실, 안전보건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시설 등

- 신청방법 및 시행기간 : II.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등과 동일

Ⅴ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한함)
- 융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절차



✓ 지원대상설비

- 산업재해 예방 또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 안전장치가 완비된 유해·위험 기계·기구
- 깨끗한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 안전인증(☎) 또는 (K)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시설·장비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 신청방법 및 시행기간 : II.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등과 동일

VI 주요 지원설비

클린사업 지원설비는 기술지원 및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시 제기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재해예방설비를 지원합니다.

안전설비개선



바닥도장·안전통로



작업발판



작업대



적재대



공구대



리프트 안전장치



산업용로봇 방호울



산업용로봇 안전매트



안전난간



동력전달부 방호덮개



프레스 자동화설비



프레스 방호장치



금형교환장치



직류아크용접기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전기설비 접지



고압가스용기 운반구



원스탑 용접운반구



이동식 코드릴
(누전차단기 부착형)



침비산방지판

작업환경 개선설비



흡음·방음·댐핑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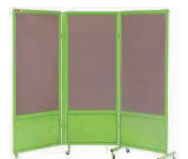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시설



국소냉방설비



유해광선 차단판



저소음 대체설비



세척·세안시설

작업공정 개선설비



이동식 대차



자동승강대차



컨베이어



에어발란스



사출성형기 호퍼로더



내충격성 바닥재



드럼 리프트



높낮이 또는 각도 조절 작업대

VII 개선사례

작업장 바닥 도장 및 안전통로 설치



작업장 바닥 에폭시 도장 및 안전통로 확보로 전도재 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프레스 방호장치(양수조작식·광전자식 방호장치)



프레스의 종류 및 작업방법에 적합한 방호장치 (광전자식, 양수 조작식 등) 설치

안전난간 및 사다리(등반아울 포함) 설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사다리 설치로 추락재해 예방

국소배기장치 설치



국소배기장치 설치로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중량물 운반용 보조기구(에어발란스)



중량물 운반작업을 보조하여 작업자의 신체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량물 운반 보조기구 설치

지역별 신청서 접수처

자세한 내용은 전국번호 1544-3088로 문의하시거나 클린사업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clean.kosha.or.kr > 알림마당(참여사업장) > 지역별 문의처

연번	기관명	주소	부서명	연락처
1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7,8층)	사업지원부	02-6711-2851
2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고직원공제회관 2층)	사업총괄부	033-815-1051
3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	지역1부	033-820-2510
4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사업지원부	051-520-0522
5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2층, 4층)	사업총괄부	052-226-0513
6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사업지원부	055-269-0523
7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9층)	사업지원부	062-949-8732
8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고용노동부종합청사 4층)	사업총괄부	063-240-8531
9	전남동부지사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지역1부	061-689-4913
10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사업총괄부	061-288-8726
11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사업총괄부	064-797-7503
12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사업지원부	032-510-0521
13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층)	사업지원부	031-259-7173
14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재정지원부	031-828-1962
15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로 230 (제이엘컨벤션웨딩홀 2층)	재정지원부	031-481-7542
16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성로 648 (호수빌딩 20층)	사업지원부	053-609-0524
17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지역2부	054-271-2034
18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3	사업총괄부	054-478-8062
19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사업지원부	042-620-5611
20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KT빌딩 3층)	사업총괄부	043-230-7142
21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사업총괄부	041-570-3403

청렴한 **KOSHA**가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

산재예방요율제로 산업재해도 줄이고, 산재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도와드립니다.

산재예방요율제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 교육을 인정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산재보험료를 인하율 및 인정 유효기간



구분	산재보험료를 인하율	인정 유효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20%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0%	1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이 해결해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 **사업주** |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5인 미만 사업장 오프라인 신청가능)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 EDI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 신청업무는 사무대행기관 활용 가능 (온라인 사이트에 안내)
- 신청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로 문의

